

# 고성군 지하수조례안

의안 번호	제200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1. 4

제출자 : 고성군수

## 1. 제정이유

「지하수법」, 「지하수법시행령」, 「지하수법시행규칙」,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·이용과 효율적인 보전·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(안제3조)

나. 취수량 제한, 지하수영향조사서, 지하수오염, 지하수정화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(안제5조~안제10조)

다. 과태료 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제11조~안제1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9-681호(2009. 8. 19 ~ 2009. 9. 9)

- 의견제출사항 : 없음

나. 관계법령

- 지하수법 제41조제1항,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1항, 제40조제3항,  
지하수법시행규칙 제5조

다. 예산조치 : 없음

라. 합 의 : 없음

마. 규제심사 : 없음

## 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지하수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하수법」,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 및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“지하수개발·이용자”라 함은 「지하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(법 제13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, 양도,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)**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.

1. 내부케이싱(지표하부보호벽)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(자흡식 자동펌프)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,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.
2. 내부케이싱(지표하부보호벽)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.

**제4조(수질검사 수수료 보조)** 군수는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, 「지하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,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·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.

1.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“지하수수질 측정망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2.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“지역지하수관측시설”로 지정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

3.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“비상급수시설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
4.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

**제5조(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
2.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
3.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
4.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**제6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군의회 의원
2. 지하수업무담당부서장
3.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·전문가
4.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·직원
5.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해촉)**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·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

- 제8조(위원회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,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.
-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9조(자료제출의 요구 등)**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0조(비밀준수)**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11조(과태료처분의 통지 등)**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·과태료 금액·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**제13조(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)**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

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.

③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
④ 부과권자는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4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**제15조(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)**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③ 당사자는 부과권자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부과권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.

**제16조(법원에의 통보)**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부과권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

2.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)** ①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(이하 이 조에서 “증가산금”이라 한다)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③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**제18조(과태료 수납부 비치·관리)**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준용규정)**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준용한다.

**제2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위반 행위 조사서

### 1. 대 상 자

가. 법인(상호)명 :

나. 대 표 자 :

다. 법 인 번 호 :

라. 생 년 월 일 :

마. 소 재 지 :

바. 연 락 처 : (전화) (팩스)

### 2. 위반 내용

### 3. 위반 사유(※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)

200 년 월 일

진술인 : (인)

##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

시 행 :

수 신 :

제 목 :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

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「지하수법」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가. 위반 일시 :

나. 위반 내용 :

2.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「지하수법」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○○○○○○○○원(₩○○○○)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, 200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 ○○○○○○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3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성군청 ○○○○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4.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,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,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, 제54조에 따른 감치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※ 붙임 :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

200 년 월 일

고 성 군 수 (인)



[별지 제3호서식]

<b>제 호</b>  <b>과태료 납부 독촉장</b>			
<b>납 부 의무자</b>	<b>성 명</b>		<b>생 년 월 일</b>
	<b>주 소</b>		
<b>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</b>			
<b>위 반 사 항</b>			
<b>체납 과태료 금액</b>	<b>금 원</b> (₩ )	<b>당초 납부기일</b>	
<p>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.</p> <p>※붙임 :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0○년 ○○월 ○○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고 성 군 수 (인)</b></p>			

[별지 제4호서식]

<b>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</b>			
신청인	성 명		생 년 월 일
	주 소		
과 태 료 처 분 내 역	부 과 기 관		납부통지서 번호
	고지 받은 일자		과태료 금액
	과태료 처분 사유		
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			
<p>「지하수법」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200○년 ○○월 ○○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신청인 : (인)</p>			
<p>고성군수 귀하</p>			

제 호

##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서

시 행 :

수 신 :

발 신 : 고성군수 (인)

**제 목 :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**

1. 「지하수법」 제4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.
2. 「지하수법」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,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	성 명		생 년 월 일	
	주 소			
과태료 처분 내역	고지 일자		과태료 금액	
	이의 제기 일 자		이의 제기 사유	

붙 임 : 1.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.

2.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.

